

1864년 사법개혁 이전의 러시아 사법제도와 사법관료

이 시 연*

1. 서론

1860년대와 1870년대에 걸쳐 러시아 차르정부는 농노해방을 시작으로 하여 일련의 위로부터의 혁신인 '대개혁'을 단행했다. 이 대개혁은 표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건이었다.

특히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분리, 공개재판, 배심제, 변호사제도의 창설, 법관의 정년 보장과 같은 원칙들을 구현한 1864년의 사법개혁은 당대인들과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서 대개혁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개혁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1864년 11월 20일에 공포된 사법개혁법(Судебные Уставы)은 민법 및 형법 자체를 개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기존의 사법제도 즉 재판소체계법 및 민·형사소송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서, 개혁된 러시아의 사법제도는 당시 가장 선진적인 서유럽 국가들의 사법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대개혁' 시대에 이루어진 개혁 중에서 그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사법개혁과 러시아의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¹⁾ 제정러시아 시대 말의 연구자 대부분은 개혁 이전의 사법제도의 여러 단점들을 지적하면서 사법개혁을 알렉산드르 2세의 선량한 의지의 산물로 간주했다.²⁾ 1917년 이후 소련 역사가들도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별다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강사

1) 제정시기까지의 러시아 법 자체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다룬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М. Ф. Владимирский-Буданов(1909); А. Н. Филиппов(1914).

2) 예를 들어 М. А. Филиппов(1871-1875); А. А. Головачев(1875); Г. Ф. Джаншиев(1891); В. Ф. Фененко, Е. Н. Берентс и И. А. Блинов(1914); А. Ф. Кони(1914); Н. В. Давыдов и Н. Н. Полянский ред.(1915) 등을 참조할 것.

른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슈발로바(В. А. Шувалова)와 빌렌스키(В. В. Виленский)가 사법개혁의 동기를 규명하는 논문을 발표했다.³⁾ 그들은 19세기 중반 광범위한 농민반란과 다수 민중의 혁명적 투쟁의 고조라는 혁명적 상황'이야말로 사법개혁을 단행하도록 차르정부에게 압력을 가한 주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개혁의 동기를 혁명적 상황'이라는 테제에 두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19세기 중반의 사회적 위기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연구자들 이후로 한동안 제정러시아 시대의 사법개혁이나 사법제도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연구자는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소련이 무너진 이후 현재 러시아 학자 코로트키흐(М. Г. Коротких)가 제정시대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⁴⁾ 그는 알렉산드르 2세 정부의 사법개혁 준비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한 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적 관료들의 견해가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렉산드르 2세가 기존 사법제도의 부분적 개선을 옹호하는 관점에서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데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1864년 사법개혁과 제정시대의 사법제도에 관한 서구학계의 관심도 꾸준히 지속된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이라도 이 주제에 관한 서구학자들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 쿠체로프(Samuel Kucherov)는 제정러시아 말기의 재판소 운영을 연구하면서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사법개혁이 구현한 원칙 및 개혁 이후 사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법개혁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쿠체로프의 연구는 1970년대에 매킨타이어(S. W. McIntire)의 1864년 사법개혁의 기원과 개혁 준비과정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어졌다. 그의 연구 또한 당시 러시아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내 몇몇 관료들이 제안한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법안 내용만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3) Шувалова (1964); Она же (1965); Виленский (1963); Он же (1969)

4) Коротких (1994)

최근에는 19세기 전반기 동안 전문적인 법지식을 갖춘 사법관료 집단의 등장에 초점을 둔 워트먼(Richard S. Wortman)의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와 20세기 말에 대개혁의 일환으로서 사법개혁 문제를 살피고 있는 링컨(Bruce Lincoln)의 연구가 제정러시아의 사법제도와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의 명맥을 잇고 있다.⁵⁾

그렇다면 1864년 이전의 러시아 사법제도는 과연 어떠했을까? 1864년 이전에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자국의 사법제도를 불신하고 비판했던 데에서 당시 사법제도의 실상을 유추해볼 수 있다. 1864년 사법개혁과 사법제도에 관한 제정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러시아학계 및 서구학계의 상기한 연구물들도 거의 대부분 사법개혁 동기 중 하나로서 이미 19세기 전반에 러시아의 사법제도가 많은 단점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법제도의 단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더불어 왜 사법개혁이 1864년보다 좀더 일찍, 즉 19세기 전반기에 단행되지 못했는가의 문제, 나아가 이 시기에 사법제도 개선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 모두 무위에 그쳤는가의 문제, 그리고 당시 실질적으로 사법제도를 운영하던 사법관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워트먼과 같은 학자는 19세기 전반기 동안 그 이전 시대의 사법관료들과는 달리 전문적 법지식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사법관료 집단이 등장한 현상을 세밀히 연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4년 이전에 당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러시아 사법제도의 실상, 이 시기 동안 사법제도 개선을 향한 정부의 노력과 한계, 그리고 당시 사법관료들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864년 사법개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선행 작업으로서 비교적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주제인 1864년 사법개혁 이전의 러시아 사법제도의 실상과 사법관료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다.

5) Samuel Kucherov(1974); McIntire(1973); Wortman(1976); W. Bruce Lincoln(1990)

2. 사법제도: 재판소체계와 소송절차

2.1. 사법제도의 역사적 변천

1864년에 사법개혁이 단행되기 이전까지 러시아의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쥔 채 통치를 행했던 모든 자들과 기관들 즉, 대공이나 차르, 보야린 두마(боярская дума), 중앙 행정기관인 프리카즈(приказ), 나메스트니크(наместник), 볼로스텔(волостель), 보예보다(воевода)처럼 여러 시대에 걸쳐 지방에서 대공이나 차르를 대표한 관료들이 재판을 행했다.⁶⁾ 사법권과 행정권의 미분화 양상은 표트르 대제(1682-1725)의 치세의 사법개혁에 의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트르 대제의 사법개혁으로 재판소체계는 네 개의 심급을 가지게 되었으며, 재판소는 귀족 출신의 배석 재판관들(заскдатели)과 행정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임명직 재판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표트르 대제의 사법개혁은 여전히 사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방장관인 보예보다는 재판관의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했으며, 원로원은 사법기관이면서 동시에 행정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 존재했다.⁷⁾ 표트르 대제의 사법개혁 이후에도 다양한 행정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관리들이 대부분의 사건을 재판하는 등 사법권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했으며, 사법기관에서는 무질서와 혼란이 증가했다.⁸⁾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키예프 루시 시대에 모든 사건의 소송절차는 소송당사자들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들이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고 당사자들이 서로 대립하여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당사자주의(состяз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만 존재했다. 당사자주의와 더불어 당시 러시아에서는 몇몇 형사사건을 제외하면 범죄의 피해자나 그 친인척들의 고소에 의해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탄핵주의(обвинительный процесс)가 주요한 소송절차였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와 당사자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분되기 시작했다. 즉 당사자가 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에 의거하지 않은 민사사건과 신원을 알 수

6) Миронов(2000), 48; Нерсесянц, ред.(1986), 203-204.

7) Kucherov(1948), 126.

8) Миронов(2000), 50.

없는 자가 저지른 형사사건은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되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초한 민사사건과 용의자 및 증거가 있는 형사사건의 재판에는 재판소에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재판소가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직권주의(розыскной процесс)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포트르 대제는 소송절차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의 노력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 1697년에 포트르 대제는 당사자주의를 직권주의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명령을 내렸다. 직권주의에 의거한 소송절차의 주요 내용에는 일정한 소추권자의 소추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소가 직권으로 심리를 개시하여 재판하는 규문주의(следственный процесс)가 포함되었다.⁹⁾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주의보다 직권주의를 중시하는 현상은 1715년에 포트르 대제가 규문주의를 상세히 기술한 <군사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조항(Воинские артикулы)>을 공포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피고의 자백이나 두 명 이상의 신용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법정증거주의 즉 정식증거(формальн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원칙이 규문주의에 채택되었다.¹⁰⁾ 정식증거 원칙은 증거의 증명력을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일임하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모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자백을 최상의 증거로 간주함으로써 자백의 증거가치를 절대시하였다.¹¹⁾ 그러나

9) 키예프 루시 시대에 모든 사건의 소송형식은 탄핵주의였다. 규문주의는 16세기 후반에 등장했다. 그러나 규문주의는 분명한 공공 평화의 파괴, 노상강도, 현장체포를 동반하는 절도, 살인에 대한 기소로 한정되었다. 전제적 지배 및 농노제 강화의 가장 큰 이정표가 된 <1649년 법전> 이후에 규문주의가 탄핵주의보다 점차 우세한 소송형식으로 자리 잡아갔다. Миронов(2000), 47-49.

10) Kucherov(1974), 8-9. 정식증거 원칙이란 법률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정립하여, 증거가치의 판단 즉 사실인정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의미한다. 정식증거 원칙에 의하면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완전한 증거(совершенн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와 불완전한 증거(несовершенн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로 나뉘었다. 완전한 증거에 속하는 증거 중 피고인의 자백은 최상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자주 고문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도 믿을만한 증인 두 명의 똑같은 신빙성 있는 증언, 서면자료, 선서도 완전한 증거에 속했다. 증인의 신빙성 정도에 관하여 말하자면 여성보다 남성의 증언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보다 귀족의 증언이, 빈자보다 부자의 증언이, 숙인보다 성직자의 증언이 더 신뢰를 받았다. Блинов(1914), 6-7, 25-26; Бочкарев(1915), 223-224; Тарановский(1992), 304-305; Kucherov(1974), 1-2; Ledonne(1974), 102-103; Solomon Jr.(1997), 6.

1723년에 포트르 대제는 직권주의를 당사자주의로 대체하는 <재판절차 형식(О форме суда)>이라는 또 다른 칙령을 내렸다. 1715년의 칙령이 아직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포고된 1723년의 새로운 칙령은 재판관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1725년에 원로원이 신성모독, 정교분열, 살인, 강도, 러시아정교회에 대한 반란과 결부된 사건과 군대 범죄에 직권주의를 사용하고, 나머지 형사사건과 모든 민사사건에 당사자주의를 사용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종료되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는 양 소송절차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포트르 대제의 칙령에 의해 재판관들 사이에서 혼란스런 양상이 발생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예카테리나 2세 통치 기간(1762-1796)에 재판소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1775년에 지방정부개혁 외중에 재판소 체계도 새롭게 조직되었다. 재판소 체계는 명백한 신분별 분리 원칙에 근거하게 되었다.¹³⁾ 이에 따라 군과 주 차원에서 각각 서로 다른 신분들을 위한 서로 다른 재판소들이 설립되었다. 전반적으로 1775년 지방정부개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에는 귀족, 소시민(мещане)과 장인 등의 도시 주민, 국가농민이라는 신분별로 구분된 다양한 재판소들이 확립되었다. 재판소체계는 4심제로 조직되었다.¹⁴⁾ 그러나 이런 재판소 체계는 국가농민이 아닌 영주 개인에게 예속된 농민인 농노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중대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소수의 농노들을 제외하면, 가족과 촌락공동체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경미한 민·형사 사

11) 자백의 증거가치를 절대시하는 규문주의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가혹한 고문의 사용을 수반했다. 1762년에 예카테리나 대제는 하급재판관들의 고문 사용 권한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1767년에 모든 주지사는 고문을 쓸모없으며 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버리라는 조항을 담고 있는 훈령 제10장에 따라서 사건을 판결하라는 명령을 여제로부터 받았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걸쳐 러시아를 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영국의 콕스(William Coxe)는 차르정부의 이 조치가 고문을 암묵적으로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에서 고문은 1801년에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19세기 전반기 동안 사용되었다. Чистяков, и Новицкая, сост.(1998), 25; Butler(1977), 88.

12) Миронов(2000), 50.

13) Jones(1970), 509-510.

14) Миронов(2000), 51; Бочкарев(1915), 209; Ефремова(1983), 48; Kucherov(1948), 126; LeDonne(1991), 192; McIntire(1973), 3.

건을 저지른 농노들은 통상의 사법기관이 아닌 자신의 영주인 귀족이 운용하는 영주재판소(вотчинный суд)에서 재판받았다.¹⁵⁾

2.2. 사법제도의 단점

그 후 몇몇 변화를 거쳐 19세기 전반기에 운영되던 재판소체계는 1775년 예카테리나 2세의 지방개혁을 배경으로 하여 확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개혁은 니콜라이 1세 치세의 재판소체계에 부정적인 잔재를 남겼다. 즉 1864년에 전면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러시아에는 모든 신분을 관할하는 단일한 재판소 체계가 여전히 확립되지 못했다. 대신 신분별 분리 원칙에 따른 재판소 체계로 말미암아 각각 다른 신분들을 관할하는 여러 재판소들이 잡다하게 존재했다. 실례로 니콜라이 1세 치세 동안에 운영되던 제1심재판소만 하더라도 군(郡) 차원에서 귀족과 국가농민 각 신분의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군재판소(уездные суды),¹⁶⁾ 상인을 제외한 도시 주민의 사건을 심리하는 시재판소(городовые магистраты и ратуш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양 수도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던 임시 거주자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궁정재판소(надворные суды), 상인들의 사건을 담당하던 상업재판소(коммерческие суды)가 존재했다. 이밖에 읍재판소(волостная расправа)와 촌락재판소(сельская расправа),¹⁷⁾ 양심재판소(совестные суды),¹⁸⁾ 성직자재판소(церковные суды), 군사재

15) 이처럼 토지귀족들은 농노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사적 재판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중대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농노들은 군재판소에서 재판받았다. LeDonne (1991), 188; Миронов (2000), 50-51.

16) 군재판소는 한 명의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군재판소의 재판장은 1831년 이전에는 3년 임기로 그 이후에는 6년 임기로 해당 군귀족 중에서 투표로 선출되었다. 배석 재판관들은 국가농민 중에서 투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농민 배석재판관들은 농민과 관련된 사건의 심리에만 참석했다.

17) 읍재판소(волостная расправа)와 촌락재판소는 온전히 국가농민들을 위한 재판소로서 농민들의 경미한 민·형사 사건을 심리했다. 이 재판소들은 온전히 농민들로부터 선출된 재판관들로만 구성되었다. 한편 농노들을 위한 하위재판소로 토지귀족의 세습영지재판소(вотчинные суды)가, 황실영지농민을 위한 하위재판소로 황실영지농민 행정당국(администрация удельных крестьян)이 있었다. Миронов (2000), 53.

18) 예카테리나 2세 시대에 창설된 양심재판소는 주로 미성년자·농아·정신병자가 저지른 민·형사 사건을 심리했다. 양심재판소에서 재판은 피고인과 같은 신분의 재판관

판소(военные суды)와 같은 특별재판소 등이 있었다. 게다가 각 대학들에는 자치재판소(автономные суды)가 운영되고 있었다. 각 주에는 민사 항소재판소(палата гражданского суда)와 형사 항소재판소(палата уголовного суда)가 제2심재판소로 작동했다.¹⁹⁾ 원로원은 모든 민·형사사건의 최고심 재판소였다.²⁰⁾ 이처럼 1864년에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러시아에는 모든 신분을 관할하는 단일한 재판소체계 대신에 각각 다른 신분들을 관할하는 여러 잡다한 재판소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소송절차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형사소송절차는 보통 수사, 공판,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하급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관하여 상급심재판소의 판결 재심이라는 세 단계를 거쳤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주지사(губернаторы)의 지휘를 받는 경찰은 형사사건이 공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다.²¹⁾ 사건수사에 대한 경찰의 보고서를 검토할 때 주지사는 새로운 수사 개

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귀족은 귀족을, 상인은 상인을 재판했다. Бочкарев (1915), 209; Ефремова (1983), 48; Миронов (2000), 51.

19) 민·형사 항소재판소는 각각 한 명의 재판장과 원로원에 의해 임명된 두 명의 고문관 및 두 명의 배석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민·형사 항소재판소의 재판장은 1831년 이전에는 황제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러나 1831년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이들 재판소의 재판장은 귀족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되었다. 귀족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배석재판관들은 귀족 중에서 선출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 주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배석재판관들은 도시 주민 중에서 선출되었다. Ефремова (1983), 47-48; Миронов (2000), 53-54.

20) 1864년 이전에 거의 모든 재판소의 재판관은 선출되었다. 그러나 원로원만 정부가 임명한 자들로 구성되었다. 원로원은 황제가 고관들 중에서 임명한 원로원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원로원 의원은 3등 문관 이상의 관등을 지녔다. Бочкарев (1915), 208-209; Миронов (2000), 53-54.

21) 1782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수행하는 임무를 지닌 경찰기관으로서 관구회(управы благочиния)가 도시에 창설되었다. 따라서 재판(суд)으로부터 수사(следствие)를 분리하는 첫 조치 및 소송절차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첫 조치가 이루어졌다. Миронов (2000), 51-52.

사건에 대한 사법권에 따라서 다양한 경찰기관-하급지구재판소, 경찰위원회, 경시총감-중 하나가 수사를 수행했다. 특별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을 담당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에만 해당한다. 정치범죄에 대해서는 일련의 정치경찰 기관이 수사를 행했다. 수사는 예비수사와 정식수사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경찰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는

시 필요성의 여부 및 이미 시작된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했다.²²⁾ 그 후 해당 사건은 심리받기 위해 재판소로 이송되었다. 이 때 수사를 통해 경찰이 확보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언과 증거 등 모든 자료는 서면의 형태로 작성되어 재판소 서기(секретарь)에게 제출되었다.²³⁾ 서기는 수사를 기록한 서류를 검토하고 수사 기록 요약문 즉 조서(записка)를 준비하는 의무를 지녔다.²⁴⁾

주로 법원에서의 공판은 재판관이 조서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하급재판소의 선출직 재판관들은 재판에 필요한 법률지식에 무지했다. 특히 하층계급 출신의 재판관들은 대부분 문맹자였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다.²⁵⁾ 따라서 사법 운영을 제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비수사를 시작했다. 일단 예비수사가 완료되면 즉 범죄 혐의자가 결정되면 그 때부터 정식수사가 시작되었다. 정식수사는 증거 수집 이외에 증인 및 피의자에 대한 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수사관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랫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지속할 수 있었다. 종종 수사관은 피의자를 고문했다. 1864년 사법개혁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 이외에 대다수의 경미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하여 사법기능도 수행해야 했다. 법에 따르면 추가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명백한 사건(беспорные дела)은 경찰에 의해 해결되어야 했다. McIntire (1973), 19-20; Мионов (2000), 61.

22) Блинов (1914), 6-9; Бочкарев (1915), 207, 226; Kucherov (1974), 31-33.

23) 18세기에 지방 소재 재판소들의 하급 사무직 관리들은 비귀족 출신이었다. 이들은 주로 몇 세기 동안 서기로 봉사해온 비귀족 출신의 사무직 관리의 자제와 성직자의 자제들로 충원되었다. Wortman (1976), 22.

24) 조서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 증인의 증언, 피의자의 답변, 소송 당사자들의 논증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Бочкарев (1915), 222-223; Ledonne (1974), 112.

25) 재판관 후보자의 교육자격을 규정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귀족이나 길드에 가입된 상인은 지방의 하급재판소 재판관직에 선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제1심 재판소에서 완전히 문맹자거나 거의 문맹자인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심지어 최고심재판소인 원로원에서조차도 고등교육을 받은 법률가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예를 들어 1841년 원로원의 페테르부르크의 일곱 개 국들과 개별적인 사법사무처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본회의에서 근무하던 사법관리 중 단 6명만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급재판소의 많은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건에 표제를 달지도 못했다. 심지어 근무수당을 받을 때에 서명도 하지 못하는 재판관들도 적지 않았다. Бочкарев (1915), 210-211; Гессен (1905), 9-10; Блинов (1914), 28.

로 수행하지 못했던 지방의 많은 하급재판소 재판관들은 실제 재판절차를 거의 서기에게 맡겼다.²⁶⁾ 서기는 실질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로서 재판 기록문을 작성하고 재판관의 판결문을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법을 인용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판결을 내릴 때 많은 재판관들은 단지 서기가 준비한 판결문에 서명하는 역할만 담당하곤 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변변찮은 봉급을 받던 서기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서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판결문을 준비하곤 했다.²⁷⁾

주지사는 제1심재판소 및 형사 항소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는 책임을 지냈다. 판결 후 만일 주지사가 제1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사건은 재심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제2심인 항소심으로 이송되었다. 형사 항소재판소에 송치된 형사사건의 경우에 만일 형사 항소재판소의 판결에 주지사가 반대하거나 해당 사건이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원로원의 재심을 받아야 하는 형사사건에 속할 경우에 그 사건은 형사 항소재판소로부터 원로원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많은 주지사가 항소심의 판결에 반대하여 원로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사용했기 때문에 원로원으로 많은 사건이 송치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원로원의 국(департамент Сената)으로 이관된 모든 사건이 항상 이곳에서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원로원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거나 원로원 사무총장(обер-прокуратура)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그 사건은 원로원 본회의로 이송되었다. 만일 원로원 본회의에서 판결의 채택에 필요한 의결정족수(2/3)가 충족되지 않거나 그 판결에 대하여 법무대신이 반대할 경우에 해당 사건은 원로원 본회의로부터 국가협의회 민정 및 종교 업무국(департамент гражданских и духовных дел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으로 이송되어 심사되었다. 이곳에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 사건은 국가협의회 본회의로 송치되었다. 최종적으로 해당사건은 국가협의회 본회의의 판결에 대한 차르의 승인을 통해 종결될 수 있었다.²⁸⁾ 민사소송절차도 형사소송절차와 본질적으로 같은 단계를 거쳤다.²⁹⁾

26) Блинов (1914), 15; Гессен (1905), 14-15; Колмаков (1886), 515; Wortman (1976), 52.

27) Wortman (1969), 224-225.

28) Блинов (1914), 23; Миронов (2000), 53-54; Kucherov (1948), 135-136.

29) 민사항소재판소에서도 소송당사자들이 상고하거나 반드시 원로원의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사건은 그 재판소로부터 원로원으로 이송되었다. 원로원은 수

이와 같은 소송절차가 드러냈던 단점들은 무엇인가. 우선 19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도 사법권과 행정권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³⁰⁾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지사와 같은 행정관료는 하급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하여 형사 항소재판소 뿐 아니라 원로원이 나 차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³¹⁾ 그런 상황에서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될 수 없었다. 행정기관에 대한 재판소의 종속적인 지위는 니콜라이 1세 치세 동안 정치경찰로 활동한 황제원 제3부가 재판과정에 개입하고 재판업무를 감독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³²⁾ 행정관리들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1864년 이전의 러시아의 재판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부속물과 같았다.³³⁾

게다가 소송절차가 재판소체계만큼이나 매우 복잡했다는 점도 1864년 이전 러시아 소송절차의 또 다른 단점이었다. 상술한 바대로 소송절차는 보통 여러 심급재판소 체계를 따라 끊임없이 아래로부터 위로 사건이 이송되어 재심되는 현상을 수반했다. 따라서 복잡한 소송절차는 신속한 사건해결보다는 사건 해결의 지연을 초래했다.³⁴⁾ 1834-1864년 동안 여러 심급재판소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민사 항소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심급 재판소에서 미해결 사건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³⁵⁾ 평균적으로 1830년대에 미해결 사건 비율이 단지 9%였던 데에 반하여 1850년대 말에 이르러 그 비율은 22%로 증가했다.³⁶⁾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한 전체 소송과정

많은 경미한 민사분쟁을 담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상고 비용을 규정했다.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원로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데 적어도 지폐로 2,000루블과 은화로 600루블의 비용이, 또한 상고의 담보물로서 지폐 200루블이 들어갔다. Блинов (1914), 22-23.

30) Блинов (1914), 9; Гессен (1905), 12-14.

31) LeDanne(1974), 115-116. 본문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몇몇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소들이 내리는 판결은 법무대신이나 국가협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32) 1826년에 설립된 황제원 제3부는 정부전복과 혁명방지를 위한 전제군주의 강력한 도구로서 관리들을 비롯한 신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치경찰로 활동했다.

33) Ефремова (1983), 49.

34) Бочкарев (1915), 228; Ефремова (1983), 49.

35) *Отчет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за 1834-1864 год* (СПб., 1835-1866); Миронов (2000), 60에서 재인용.

36) Бочкарев (1915), 228-229; Миронов (2000), 60-62.

은 수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었다.³⁷⁾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당사자들은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판관뿐 아니라 재판소의 서기 등 사법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곤 했다.³⁸⁾ 사실 1864년 사법개혁 이전 러시아 재판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사법관리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던 수뢰 관행이었다. 수뢰는 한편으로 그들의 낮은 도덕 수준 때문에 벌어진 관행이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864년 사법개혁 이전에 러시아 사법 관리들의 봉급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니콜라이 1세 치세에 사법관리들의 봉급은 다른 정부 관리들의 봉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예를 들어 세무감독국장의 봉급이 연간 4,406루블이었을 때 민.형사항소재판소의 재판장은 연간 총 1,143루블 65코페이카의 봉급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사법관리 중 가장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계층은 재판소 서기와 같은 사법기관의 하급 사무직 관리들이었다. 이 하급 사무직 관리들은 연간 30루블이나 40루블의 봉급밖에 받지 못했다.³⁹⁾ 따라서 얼마 되지 않는 봉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법률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방의 많은 하급재판소의 재판관들과 서기들이 쉽게 뇌물에 흔들려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설령 재판관이 어느 정도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은 재판과정에서 법을 적용하는 데에 자유판단과 같은 재량을 지니지 못했다.⁴⁰⁾ 그 주된 이유는 1864년 이전에 형사소송절차의 지배적인 형태가 규문주의였다는 점에 있었다.⁴¹⁾ 재판관은 규문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정식증거 원칙을 준수해

37) 1864년에 이르러 모든 심급재판소의 미해결 사건은 167,000건이었다. 사건이 계류되어 있던 평균 기간은 약 4년이었다. Миронов (2000), 60-61.

38) 재판 기록을 작성하고 때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서기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배석재판관들은 단순한 조연에 불과했으며 많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불참했다. 따라서 재판정에서 소송당사자들과 피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는 재판관이 아니라 서기였다. Бочкарев (1915), 213.

39)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за 100 л. (1802-1902 г.), 74-75, Бочкарев (1915), 216-217에서 재인용; Гессен (1906), 8-9. 여기서 Гессен에 따르면, 몇몇 항소재판소에서 근무하던 하급 사무직 관리들은 종종 1루블 이하의 봉급을 받기도 했다.

40) Бочкарев (1915), 227; Solomon Jr. (1997), 6.

41) 1864년 이전 러시아의 형사소송절차는 규문주의 원칙에 근거했다. 규문주의는 비밀 심리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와 같은 특징을 보였다. 민사소송절차는 형식 면에서 형사소송절차와 약간 차이를 보였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원

야 했다. 즉 재판관이 특정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만한 증명력을 갖춘 일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재판관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타당한 증거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서면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해당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사법당국이 검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규문주의 하에서 재판관은 주로 조서를 검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규문주의에 입각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인뿐 아니라 소송당사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까지도 법정에서 참석할 수 없었다.⁴²⁾ 당연히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구두변론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⁴³⁾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 현장에 피고인의 대리인이 참석하지도 못했고 구두변론도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에 대해서 거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재판관이나 서기 모두 법을 수호하는 사법관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재판관들의 사회적 신분은 주로 귀족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제대로 된 법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결여했던 귀족들은 대체로 재판관직을 성가신 의무로 인식하면서 선출직인 지방의 재판관직에 봉직하기를 꺼려했다. 권력 및 문화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각 지방의 하급재판소 재판관의 위신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봉급 또한 형편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귀족은 질병이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재판관직을 거부하거나 사임했다. 따라서 종종 가난한 귀족들이나 운이 나쁜 귀족들이 재판관직을 떠맡았다.⁴⁴⁾ 이런 재판관직과는 달

칙에 근거했다. 규문주의의 여러 특징에 대해서는 Бочкарев(1915), 220-225; Ефремова(1983), 49; Kucherov(1974), 1-2; Ledonne(1974), 101-118을 볼 것.

42) 1864년 사법개혁 이전에 변호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스트랴피체(стряпчие)라고 불리던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대리인과 민사소송 당사자들의 대리인은 전문적인 사법훈련을 받은 법률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재판소에 제출할 문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 불과했다. 따라서 1864년 사법개혁 이전에 재판소에서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대리인들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그러나 대리인의 기능은 쟁점이 되는 문서의 기록과 증거의 제출에 국한되었다. Гессен(1905), 7; Kucherov(1974), 107-109; Ledonne(1974), 110; Solomon(1997), 7.

43) Ефремова(1983), 49; Solomon(1997), 6.

리 서기직에는 보통 비귀족층 가운데 몇 세대에 걸쳐 재판소의 하급 사무직원으로 봉직해온 자들의 자제들이나 교회를 떠나 관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은 성직자들의 자제들이 봉직했다. 대다수의 서기는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과 귀족 재판관보다 훨씬 더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비귀족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재판관으로 승진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박봉에 시달리던 서기는 법을 정확히 준수하는 데 관심을 두기 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뇌물을 받고 조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하곤 했다.⁴⁵⁾

이런 사법현실과 시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던 러시아 사법제도의 여러 특징은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당대인들의 불신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도 행정당국에 대한 재판소의 완전한 종속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정기관들의 재판 개입으로 말미암아 당대인들은 확고한 법과 올바른 재판에 대한 존중심을 함양하기보다는 법과 사법제도 자체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무지하고 부패로 악명 높은 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소, 엄중한 규문주의에 의거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복잡한 재판소체계 및 소송절차로 말미암아 지연되는 판결 등은 러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⁴⁶⁾ 이미 18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전제적 정치구조와 농노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던 라지쉘프(A. H. Радищев)는 당시 러시아의 재판소 역시 여러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했다. 특히 그는 재판관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그들의 수뢰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⁴⁷⁾ 1825년에 차르체제의 변화와 농노제 폐지를 촉구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데카브리스트들도 당시 사법제도와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격렬히 비판했다. 데카브리스트 봉기를 진압하고 제위에 올랐던 니콜라이 1세 자신도 19세기 전반에 러시아의 사법제도가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정도였다.⁴⁸⁾

게다가 1864년 이전의 사법제도는 근본적으로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44) Блинов(1914), 15. 만일 재판관이 사임하거나 재판관직을 맡으려고 하는 귀족들이 없을 경우에 주지사는 임시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 경우 종종 지방의 행정관청에서 봉직하던 비귀족들이 임시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후에 귀족들은 정식으로 재판관을 선출해야 했다. Wortman(1976), 81.

45) Wortman(1976), 22-23, 52, 80-82.

46) Кони(1914), ii; Колмаков(1886), 527; Ефремова(1983), 50; Е. П. Карнович(1873), 1.

47) Радищев(1938), 233-234, 247-248; Виленский(1963), 55에서 재인용.

48) Колмаков(1886), 519.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녔다.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소의 잦은 혐의형 판결(приговоры об оставлении в подозрении)'은 러시아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데 일조했다.⁴⁹⁾ 당대인들은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 중 완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법정증거주의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끝까지 범행 사실을 자백하지 않아 혐의형을 선고받는 것과 그 후 그 진범이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법에 대한 존중심을 상실했다.⁵⁰⁾ 따라서 그런 사법제도 하에서 많은 러시아인들은 법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법의식을 갖고 있었다.⁵¹⁾ 이에 대하여 한 동시대인은 양식이나 예절을 위반해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제할 수 없는 인간으로 치욕을 당할 것이고 사회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필자 추가] 만일 당신이 민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고 지적했다.⁵²⁾ 오도옙스키(В. Ф. Одоевский) 공작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본래 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국가의 계급제도의 여러 단계에 부여된 힘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하층계급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법의 신성함과 불변성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수많은 속담에서 표현되고 있다.

한편, 법의 신성함과 불변성에 대한 상층계급들의 불신은 더욱 더 애통할만

49) 혐의형 판결이란 피고인을 풀어주지만 그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두는 판결을 가리킨다. 혐의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떠났지만 그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계속 받는 가운데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다. 규문주의의 엄중성은 혐의형 판결을 야기하곤 했다. 정식증거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된 모든 증거는 법 규정에 의해 정확히 평가되어야 했다. 그러나 만약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가 유무죄 여부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 재판소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보통 혐의형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고의 무죄가 완전히 증명되기 전까지 피고를 유죄로 추정하는 규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유죄추정의 원칙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법원들의 재판활동에 대한 러시아 법무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세기 전반기에 형사 사건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은 단지 12.5%였으며, 나머지 87.5%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혐의를 두는 혐의형 판결이었다. 즉 19세기 전반기 동안 재판소는 대부분의 사건을 혐의형 판결로 종결지었다. Блинов(1914), 25-26; Kucherov(1948), 127-128; Solomon(1997), 6; Бочкарев(1915), 224; Гессен(1905), 7; Wortman(1976), 239.

50) Блинов(1914), 26.

51) Блинов(1914), 26; И. Иллюстров(1885), 23-26; В. Даль(1984), 128-133.

52) С. Громека(1857), 177; Коротких(1994), 48에서 재인용.

한 현상이다. 만일 재판관이 상층계급에 속한 소송당사자들 중 한편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부탁에 화를 낸다면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런 부탁을 한 상층계급 소송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증오와 복수의 원인이 되곤 한다”고 기록했다.⁵³⁾ 1855년에 검열관 니키펀코(A. В. Никитенко)도 일기를 통해 법에 대한 경멸이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현상임을 지적하면서 철도, 천박함, 거짓말, 그리고 법 준수(законность)에 대한 경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상처이다”고 기록했다.⁵⁴⁾

즉 대부분의 당대인들은 여러 단점을 노출하는 사법제도가 유지되는 현실 그리고 효율적이고도 올바른 재판이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과 사법제도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 여기에는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농노들도 포함되었다. 농노들은 귀족의 의지에 따라 생활해야 했으며 자의적인 영주 재판에 복종해야 했다. 즉 귀족은 영주재판소에서 농노들을 재판하고 죄질에 상관없이 때때로 무거운 체형을 가하는 등 농노들에게 자의적인 횡포를 표출하곤 했다. 따라서 농노들에게 법은 개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규제와 처벌을 강제하는 도구였다. 재판소 또한 개인의 권리보호의 핵심수단이기보다는 형벌을 가하는 억압적인 도구로 인식되었다.⁵⁵⁾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당대인들 사이에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심보다는 불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요컨대 제정러시아의 법학자 다비도프(Н. В. Давидов)의 증언처럼 당대인들에게 친분별 분리주의 원칙, 사무적인 비밀주의, 엄격한 형식주의, 너무 많은 재판심급, 이런 많은 심급에 따라서 사건을 심리하는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확립된 1864년 사법개혁 이전의 재판소는 끔찍한 기관이었으며, 범죄자 뿐 아니라 무죄인 사람에게도 경멸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사법기관의 수위는 상식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고관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떨었다.”⁵⁶⁾

53) Одоевский(1985), 45; Коротких(1994), 47-48에서 재인용.

54) Никитенко(1955), 431.

55) Кони(1914), 92 이미 18세기 말에 라지쉴프는 영주의 법정은 공개적으로 대중을 억압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법 앞에서의 농노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비판했다. 오두영(2001), 219-220; Радищев(1938), 233-234; Виленский(1969), 72에서 재인용.

3. 1864년 이전의 법전 및 사법제도 정비작업

3.1. 법전 정비작업

19세기 전반기에 사법제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649년에 공포된 <알렉세이 법전(Соборное Уложение)> 이래로 러시아 제국에는 그 법전을 대체하는 조직적이고도 통일성을 갖춘 법전이 오랫동안 편찬되지 않았다.⁵⁷⁾ 17세기 중반에 편찬된 알렉세이 법전 이래로 새롭게 제정된 수천 개의 법률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산적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을 구분하고 찾기도 쉽지 않았다. 이미 18세기 초에 이르러 차르정부 내에서는 법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법전의 편찬이 필요하다는 분

56) Давидов(1995), 174; Миронов(2000), 56에서 재인용.

57) 키예프 시대인 11세기 전반에 현자 야로슬라프에 의해서 <루스카야 프라브다(Русская Правда)>가 편찬되었다. 주로 슬라브 관습법의 토대 위에 비잔틴의 법을 가미하여 만들어진 이 법전은 러시아 최초의 법전이었다. 모스크바 러시아 시대인 1497년에 이반 3세(1462-1505)에 의해서 러시아 법전인 <수제브니크(Судебник)>가 공표되었다. 이 법전은 키예프 시대의 <루스카야 프라브다>와 프스코프의 <수제브니크>를 참조하여 편찬된 것으로서 농민들의 이주 자유를 제한함으로써(11월 26일 성 유리의 날을 전후로 한 2주간에만 농민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게 함) 농노제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550년에는 이반 4세(1533-1584)에 의해 새로운 법전 <수제브니크>가 공표되었다. 1550년의 수제브니크는 주지사로 하여금 자신의 하급 관료들의 비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세습토지의 양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법질차의 개선 및 귀족계급의 이해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지녔다. 1551년에는 상당한 양의 교회법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100항목 결의집(Стоглав)이 작성되었다. 그 후 차르 알렉세이(1645-1676) 치하인 1649년에 국민회의(земский собор)에서 새로운 법전인 <알렉세이 법전>이 채택되었다. 일명 <1649년 법전>으로 불린 이 법전은 1550년의 수제브니크, 비잔틴의 법, 1588년 리투아니아 법규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알렉세이 법전>은 몇 개의 특수한 예외들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한번 농노가 되면 영원히 농노이다"라는 원칙을 취했다. 농민들은 가족, 재산 등과 함께 지주의 소유로 선포되었다. 이 법전에 따라 농민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법적·행정적 권력이 지주들에게 부여되었다. 이 법전의 간행은 러시아에 농노제가 법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했다. <알렉세이 법전>은 1832년에 간행된 <러시아제국 법전>으로 대체될 때까지 러시아 법의 기본적인 형태를 결정한 법전이었다. MacKenzie and Curran(1993), 154, 193, 215; Беляев(1879), 515-516, 525; Нерсесянц(1986), 3, 22-27, 31; 썬모쉬나(2006), 79, 81-82

위기가 무르익었다.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표트르 대제 시대부터 예카테리나 여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18세기 동안 입법위원회(1767)를 비롯하여 일련의 법전편찬 위원회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위원회는 새로운 법전편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르정부의 법전편찬 노력은 19세기 초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1801년 7월 5일에 알렉산드르 1세는 법전편찬위원회 설립을 명령했다. 이 위원회는 1700년 이래로 설립된 열 번째 법전편찬위원회였다. 하지만 법전편찬 업무에 대한 알렉산드르 1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법전편찬 업무에 관한 분명한 접근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차르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⁵⁸⁾

이런 상황을 타개한 인물은 스페란스키(М. М. Сперанский)였다. 1808년 알렉산드르 1세는 스페란스키를 법무부 부대신으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별 진척이 없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법전편찬 목표를 달성하라고 명령했다. 스페란스키는 19세기초 당시의 유럽 국가들의 법 모델과 법 원칙을 차용하여 낡은 1649년 법전을 근대적이고도 새로운 포괄적인 법전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스페란스키를 의장으로 하여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회는 민법전 준비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 1809년에 위원회는 나폴레옹 법전을 모델로 한 민법전의 첫 부분(가족법)을 완성했다. 1810년 1월 1일 민법전의 첫 부분에 관한 법전 초안이 국가협의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에 제출되었다.⁵⁹⁾ 민법전의 두 번째 부분(재산법 및 상속법)에 관한 법전 초안은 같은 해 후반기에 국가협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되었다.⁶⁰⁾

그러나 스페란스키의 법전편찬 노력은 곧 역풍을 만났다. 카람진(Н. М. Карамзин)을 필두로 하여 많은 보수주의적 관료들은 스페란스키의 법전 초안에 반대했다. 1811년 카람진은 그 법안이 나폴레옹 법전의 번역에 불과하며 러시아 역사 전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적 관료들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던 스페란스키는 1812년 초에 거짓 무고로 직위 해제되었으며 3월에 유형에 처해졌다. 같은 해 9월 나폴레옹 군대의 러시아 침공 또한

58) McIntire(1973), 30-31.

59) 1810년에 창설된 국가협의회는 1810-1906년 동안 모든 대신들, 신성종무원장, 다른 고위직 관료들과 차르가 임명하는 국가협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국가 최고 자문기관이자 법안 심의기관이었다.

60) Филиппов (1914), 579-580.

광범위한 차원에서 볼 때 스페란스키의 법전 초안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1810년대 말까지는 알렉산드르 1세가 국가 개혁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군대에 거둔 러시아의 승리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지배계층은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더 이상 강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관료들 사이에서 보수주의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 모든 프랑스식 관념은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14년 8월에 알렉산드르 1세는 국가협의회에게 나폴레옹 법전을 모델로 한 스페란스키의 민법전 초안 전체를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국가협회 성원 대부분은 스페란스키의 법전이 러시아 법에 충분히 의거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하면서 그 법전에 반대했다. 그들은 법전편찬의 첫 번째 과제는 러시아의 모든 현행 법률을 수집하여 편찬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⁶¹⁾ 결국 스페란스키의 법전 초안은 거부되었다.

이후 법전편찬 과제는 다음 차르인 니콜라이 1세에게 넘어갔다. 데카브리스트 반란을 진압하면서 통치 첫날을 시작한 니콜라이 1세는 러시아제국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의 기운을 제어하고 전제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했다. 특히 전제체제 수호를 위해서 명확한 법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간주한 니콜라이 1세는 치세 초기부터 법전편찬 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⁶²⁾ 하지만 데카브리스트 반란으로부터 급격한 개혁에 대한 희망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우게 된 그는 매우 점진적이고 신중한 형태의 변화만 관용하고 추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런 차원에서 니콜라이 1세가 채택한 법전편찬 원칙은 보편적 법 개념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법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르가 공포한 여러 법률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전으로 편찬하는 것이었다.⁶³⁾ 1826년에 니콜라이 1세는 법률편찬에 있어 그러한 자신의 의사를 즉시 수행하고 자신이 직접 완전히 통제하는 기구로서 황제원 제2부(II отделение императорской канцелярии)를 창설했다. 황제원 제2부의 부장에는 페테르부르크 대학 교수 발루기안스키(М. А. Балугьянский)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공식적 관직도 갖지 않은 스페란스키가 실질적으로 법전편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

61) *Архи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1869-1904), 54-76; McIntire(1973), 33-34에서 재인용.

62) Садовничий, ред.(2004), 166-167.

63)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1801-1901*, 53-57; Плетнев(1915), 271-272.

니콜라이 1세의 엄중한 감독 하에 황제원 제2부는 신속히 작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1649년의 법전 이후 여러 정부기관에 두서없이 축적된 매우 다양한 법률들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18세기말 이전까지 많은 칙령과 법률들은 이를 요구하는 기관들에게만 필사본 상태로 유포되었다. 그 후 18세기 말까지 많은 칙령과 법률들은 인쇄되지 않은 채 공표되었다. 게다가 단일한 입법 원천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개념, 법 전통 및 절차는 고려되지 않은 채 차르 이외에 원로원, 궁정, 행정부처들(министерства)과 같은 다양한 국가기관들의 결정에 의해 법률이 만들어지고 공표되었다.⁶⁴⁾ 나아가 모든 법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같은 장소에 보관되지도 않았다.⁶⁵⁾ 따라서 황제원 제2부는 수많은 국가기관의 문서고들에서 다양한 법률을 찾아야만 했다. 이런 작업을 토대로 하여 황제원 제2부는 1649년 이래로 공표된 명령(указы), 포고(манифесты), 칙서(рескрипты), 법령(уставы), 규정(постановления) 등을 담고 있는 3천 개 이상의 필사본 자료들과 인쇄 자료들을 원로원, 신성종무원, 콜레기야, 행정부처들의 문서국에서 수집하고 검토하여 연대순으로 배치했다.

마침내 1828년 황제원 제2부 산하의 인쇄소는 <러시아제국 법률전집(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의 첫 권을 인쇄했다. 1828년부터 1830년에 걸쳐 45권으로 된 <법률전집>과 그에 대한 3권으로 된 주해서 및 부록이 간행되었다. <법률전집>은 1649-1830년 동안 공포된 약 3만 1천 개의 법률들을 포함했다. 물론 빠른 업무속도를 고려해볼 때 <법률전집>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 스페란스키는 다양한 법률들 중에서 차르가 공표하거나 차르의 이름으로 공표된 법률들만을 <법률전집>에 포함했다. 따라서 상당한 양의 법률이 제외되었다.⁶⁶⁾

<법률전집>을 간행하면서 황제원 제2부는 그 <법률전집> 중에서 니콜라이 1세 치세 당시까지 유효한 법률들을 발췌하여 <러시아제국 법전(Свод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을 편찬하는 업무에 착수했다. 이번에도 업무를 주도한 자는 스페란스키였다. 스페란스키가 주도하는 황제원 제2부의 노력으로 말미

64) Филиппов(1914), 563; Raeff(1969), 322-323. 1810년에 국가협의회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법률을 처리하는 단일한 권력기관이나 통일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65) Whisenhunt(2001), 71.

66) Whisenhunt(2001), 72; Филиппов(1892), 215-216; McIntire(1973), 39-40에서 재인용.

암아 1832년에 주제별로 법률이 배치되어 있는 15권으로 구성된 <러시아제국 법전>이 간행되었다.⁶⁷⁾

하지만 <법률전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전>은 몇 가지 단점이나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황제원 제2부는 서로 모순된 여러 법률 중에서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률들만을 선택하여 <법전>에 포함했다.⁶⁸⁾ 또한 <법전>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법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의 법률들 가운데 <법전> 편찬 당시까지 유효한 법률들을 선택한 후 그 법률들의 내용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은 채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법전>이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된 주요 원인은 니콜라이 1세가 전제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의 법률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법전>의 편찬이 반드시 법치질서나 법치국가의 확립을 의미하지도 않았다. 이 점은 <법전>이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절대적 권한을 지닌 차르가 지배하는 전제체제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법전>의 제1조는 러시아제국의 황제는 전제적이고도 절대적인 군주다. 신은 두려움 뿐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도 차르의 최고 권한에 복종할 것을 명령한다”고 규정했다. <법전> 제47조도 러시아 제국은 전제군주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확고한 법의 기반 위에서 지배된다”고 규정했다. 즉 47조는 법의 지배 원칙이 통치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선포했다. 그렇지만 이런 법규정들과는 달리 실제로 러시아제국은 법의 지배가 확립된 국가가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제47조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러시아제국에서 법을 만드는 자는 전제군주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법에 구속되지 않은 채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나 혹은 어느 것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였다. 즉 차르는 한편으로는 법의 기반 위에서 러시아제국과 국가기관들이 통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는 종종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무시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법이든 구두로 이루어지는 차르의 명령 형태이건 간에 러시아에서는 무엇보다도 차르의 의지가 실질적인 법으로 간주되었으며 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⁶⁹⁾

67) McIntire(1973), 42-43.

68) Филиппов (1914), 589; Saunders(1992), 129-130.

69) Владимирский-Буданов(1909), 261. 1802년에 스페란스키도 “우리는 러시아의 군주가 모든 권력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차르는 입법자이며, 최고 재판관이며 자기 자신의 법에 대한 첫 번째 집행자이다. 법은 군주의 의지의 표현이다”라

그러나 이와 같은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전>은 1649년 이래 편찬된 최초의 법전이었던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차르 니콜라이 1세의 법전편찬에 대한 관심과 황제원 제2부의 노력은 18세기 초 이래로 어느 차르나 법전편찬 위원회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수 년 내에 달성했다. 법전편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법률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모든 관료들과 사법관료들은 혼란스럽게 산재해있던 상호 모순되고 불완전한 법률들을 참고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믿을만한 법률들을 제공받게 되었다. 게다가 법전편찬은 관료들의 직권남용에도 타격을 가했다. 물론 법전이 편찬되었다고 해서 관료들의 직권남용이 근절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내린 결정은 더 이상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지속될 수 없었다. 통일된 법규범을 통해 관료들의 결정 및 재판관들의 판결이 법률에 일치하는가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전편찬은 합법성에 관한 분명한 개념을 러시아인들에게 도입한 중요한 조치였다.⁷⁰⁾

3.2. 사법제도 정비작업

법전편찬 뿐 아니라 니콜라이 1세 치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먼저 니콜라이 1세 통치 초기에 발생한 데카브리스트의 반란은 당대 사법제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차르 정부에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데카브리스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독립적인 사법부, 공개재판, 중신 재판관직, 배심제, 변호사제도와 같은 원칙들에 기초한 새로운 사법제도의 수립이었다.⁷¹⁾ 하지만 1826년 12월 6일에 조직된 비밀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데카브리스트들의 지적을 무시했다.⁷²⁾

고 강조했다. Осипов ред.(2002), 217.

제정러시아에서는 차르가 만든 법과 차르가 승인한 명령 사이에 확고한 구분이 없었다. <법전>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은 법전(уложения), 법(уставы), 법규(учреждения), 칙서(грамоты), 규정(положения), 훈령(наказ), 성명(манифесты), 명령(указы), 국가협의회 의견(мн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그리고 보고(доклады)의 형태로 공표되었다. Скриплев, ред.(1994), 26; Whelan(1982), 47-50; Szeftel(1965), 107-109, 111-112.

70) Lincoln(1978), 332, 342.

71) Тургенев(1982), 33.

72) McIntire(1973), 53.

하지만 사법개혁에 관한 차르정부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836년 10월 29일 법무대신 다쉬코프(Д. В. Дашков)는 민·형사 소송절차법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긴 보고서를 니콜라이에게 제출했다. 니콜라이 1세는 우선 형사소송절차부터 개혁해야한다는 조건 하에 다쉬코프의 제안을 승인했다. 그 결과 법무부와 황제원 제2부는 공동으로 <심리법안(проект о следствии)>을 작성했다.⁷³⁾ 본질적으로 그 법안은 현행 법률들에 대한 몇 가지 수정만을 담고 있었다. 1839년에 국가협의회에 제출된 <심리에 관한 법안>은 심의되었지만 승인되지는 못했다.⁷⁴⁾

게다가 사법분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던 고위 관료 중 아직 그 누구도 사법 분야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1840년부터 법무대신으로 봉직하던 파닌이었다. 1842년 파닌은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연례 보고를 했다. 그 보고서는 사건이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현상을 폭로했다. 1844년 파닌은 다시 한 번 더욱 방대한 규모로 같은 조사에 착수했다. 그 후 1844년 8월경에 그는 소송절차의 단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광범위한 규모의 조사에 비춰보았을 때 파닌이 맺은 결론은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이었다. 파닌은 러시아의 사법제도의 비참한 상황은 주로 부적절하고도 느리게 이루어지는 사건 수사에 기인한다고 간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주에서 시행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전면적인 감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파닌은 많은 심급의 재판소체계 및 행정권과 사법권의 혼재에 대한 문제점이나 탄핵주의의 도입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⁷⁵⁾

1844년 11월에 황제원 제2부 부장 블루도프는 사법제도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형사소송절차의 변화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비록 블루도프 역시 기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안은 파닌의 제안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성격을 지녔다. 예비수사에 대한 변화만을

73) <심리법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은 형법 위반에 대한 심리 원칙에 관한 것이었으며 둘째 부분은 관료들의 범죄 조사 원칙에 관한 것이었다. 그 법안의 작성자들은 본질적인 변혁을 야기하는 자라는 의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법안의 거의 각 조항마다 새로운 법조항은 기존의 법조항을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것이지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Плетнев(1915), 272-274.

74) Виленский(1969), 117.

75) Плетнев(1915), 277-278.

주장하는 파닌과는 달리 블루도프는 불법적으로 체형을 선고하는 재판관에 대한 처벌 부과, 예비수사의 각 단계에 대한 기한 설정,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변호인(защитник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경범죄에 대한 심리를 행하는 제1심과 제2심의 특별 경찰재판소의 창설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안에도 불구하고 블루도프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규문주의 원칙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소의 판결을 주지사가 승인하는 제도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되도록 계획되었다. 나아가 블루도프는 배심제도, 공개재판, 구두주의, 재판관의 종신임명제 등을 제안하지도 않았다.⁷⁶⁾ 하지만 블루도프의 제안 역시 이전의 다른 제안들처럼 승인되지 못했다.

블루도프의 형사소송절차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새로운 형법전 편찬 시도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이미 <법률전집>과 <법전>이 간행되었을 때 니콜라이 1세는 불완전한 형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새로운 형법전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니콜라이 1세는 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광범위하게 퍼진 형사재판의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했다. 새로운 형법전 편찬에 관한 모든 업무의 총지휘는 황제원 제2부장 블루도프에게 위임되었다. 1845년 8월 15일에 새로운 <형법전>은 니콜라이 1세의 승인을 얻었다.⁷⁷⁾

1845년 형법전의 공포 이후 블루도프의 지도 아래 황제원 제2부는 러시아 제국 내외 몇몇 서유럽 국가들의 형법 적용에 관한 정보를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48년 프랑스 2월혁명 이후 서유럽에 몰아친 혁명의 결과 러시아 니콜라이 1세 정부의 보수주의 경향과 반동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유럽의 혁명 열기에 놀란 니콜라이 1세는 국내에서 혁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압의 강도를 높이면서 전제주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노력했다. 반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혁명방지라는 지상 과제와 부딪친 사법개혁 시도는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⁷⁸⁾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개혁하려는 황제원 제2부의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니콜라이 1세가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블루도프에게 촉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1848년 11월 16일 니콜라이는 법무대신 파닌으로부터

76) Плетнев (1915), 282-283.

77) <형법전>의 정식 명칭은 <형사 및 교정처벌 법전(Уложение о наказаниях уголовных и исправительных)>이었다.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1801-1901(СПб., 1901), 59-60.

78) Блинов (1914), 59-60.

바타쇼프라는 자의 영지와 채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 사건은 몇 년 동안 재판소에서 계류 중이었다. 니콜라이 1세는 그 사건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깜짝 놀랐으며 그런 일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더욱 우려했다. 그 후 니콜라이 1세는 블루도프를 불러서 민사소송법의 결점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니콜라이 1세는 먼저 새로운 민법전 편찬을 명령하는 대신에 블루도프에게 새로운 민사소송법을 파닌과 공동으로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파닌과 블루도프의 의견 대립 속에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⁷⁹⁾

본질적으로 니콜라이 1세는 급진적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새로운 요소들을 정부조직에 도입하기를 두려워한 보수주의자였다. 그 결과 니콜라이 1세 시대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나마 사법제도의 변화를 담고 있는 법안들이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법 분야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전 편찬의 성공은 뇌물관행과 부패로 얼룩진 재판소 및 사법제도의 현실을 타파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전의 편찬과 사법개혁을 담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 과정을 겪으면서 블루도프의 경우처럼 니콜라이 1세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점점 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비록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니콜라이 1세 치세에 작성된 여러 사법개혁 법안들과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증가는 알렉산드르 2세 치세에 이루어질 사법개혁의 바탕이 되었다.

요컨대 법전 편찬 뿐 아니라 니콜라이 1세 치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법안들도 만들어졌다. 법전편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치세 전반에 걸쳐 니콜라이 1세는 전제정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고도로 효율적인 관료기구로서 사법기관을 계획하고 사법제도의 단점을 수정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비록 그러한 법안 중 어떠한 것도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법들이 제안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성을 지녔다. 사법개혁에 관한 법안의 준비와 그에 대한 심의는 차르정부 내에서 사법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증가시켰던 것이다.⁸⁰⁾

79) Джаншиев (1907), 77.

80) McIntire(1973), 63; 72.

4. 니콜라이 1세 치세의 전문적 법교육과 개명 사법관료층의 형성

4.1. 전문적 법교육

제정러시아의 통치자들은 재판소의 결점을 자주 언급하고 그 결점을 경멸했지만 그들은 체계적인 법률 훈련을 받은 사법관료들 및 법전문가들의 육성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차르들은 전제군주만이 법을 만들거나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재판관을 군주의 법을 적용하는 중재자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면서 재판관을 비롯한 사법관료들이 결코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되며 단지 법을 충실히 시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⁸¹⁾ 따라서 1864년의 사법개혁 이전에 러시아의 재판관은 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⁸²⁾ 또한 니콜라이 1세를 포함하여 여러 차르들은 변호사(адвокаты)와 같은 법전문가들이 양성되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⁸³⁾ 러시아 차르들은 변호사를 부패하고 부정직한 자들이라고 간주했다. 특히 프랑스혁명이 발발한 이후 차르들은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역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변호사를 선동적인 성향의 소유자라고 간주하면서 법전문가들의 양성에 대해 더욱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예를 들어 니콜라이 1세는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모스크바 총독 골리친(Д. В. Голицын) 공과 대화를 하던 중 프랑스혁명 때 누가 프랑스를 파괴했는가? 바로 변호사가 아닌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오! 미라보, 마라, 로베스피에르 등이 누구인가!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오. 러시아는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변호사 없이도 러시아는 잘 지낼 것이오”라고 언급했다.⁸⁴⁾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존재에 대한 니콜라이 1세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바로 니콜라이 1세 치세 동안에 전문적인 법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니콜라이 1세는 데카브리스트들의 반란의 원인을

81) Wortman (1969), 225. 게다가 통치자로서 차르의 개인적 권력은 어느 때건 법의 효력을 취소하고 파기할 수 있었다. 니콜라이 1세 역시 필요할 경우 정규 사법절차를 취소하거나 뒤엎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충신들 또한 그렇게 행하도록 허락했다. Wortman (1976), 9-18, 180.

82) Wortman (1976), 11; Szeftel (1965), 114-115.

83) Колмаков (1886), 535-536; Kucherov (1974), 113-115.

84) Колмаков (1886), 535-536.

고찰하면서 일반적인 교양교육이 젊은이들에게 차르의 전제권력을 파괴하는 혁명 의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젊은이들이 교양교육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 즉 행정사무에 필수적인 실용적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고 간주했다. 따라서 그는 통치자에게 순종적인 관료들을 육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실용적인 필요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전문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했다.⁸⁵⁾ 그 결과 니콜라이 1세 치세 동안 의학교육, 기술교육과 같은 전문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법교육이 강조되었다.

전문교육이 순종적인 관료들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니콜라이 1세는 치세 초반기부터 전문적인 법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사실 그의 치세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제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러시아법에 관한 강좌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1828년에 니콜라이 1세는 모스크바 및 페테르부르크 종교아카데미에서 뽑은 여섯 명의 뛰어난 학생들에게 법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황제원 제2부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법에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 황제원 제2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로마법, 러시아 공법(公法),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⁸⁶⁾ 학업을 마친 6명의 학생들은 베를린대학으로 파견되어 2년 동안 좀더 전문적인 법교육을 받았다.⁸⁷⁾ 이후 그들은 귀국하여 황제원 제2부에서 봉

85) Raeff(1984), 150-151; Wortman(1976), 44-45.

86) 11세기 이후로 러시아법은 서유럽 법체계의 공통적 전통인 로마법에 토대를 두지 않은 채 자생적으로 발전해왔다. 비록 러시아가 몇몇 비잔틴법을 차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남아있는 슬라브법 필사본들은 로마법 전통의 토대인 로마법대전으로부터 직접 차용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로마법대전은 두 사람 이상의 매개자를 거쳐서 간략하게 축소되고 수정된 형태로 러시아에 도착했다. 따라서 로마법대전에 구현되었던 고전법의 전통은 러시아에 전해지지 못했다. 이후 17세기 말까지 러시아에는 통일된 형태의 로마법대전이 알려지지 않았다. 간혹 로마법대전의 일부분이 그리스어 및 슬라브어 번역본을 통해 러시아인들에게 알려졌지만 그들은 로마법의 일부분만을 알았을 뿐이었다. 이처럼 로마법의 부분적 차용은 러시아에서 로마법의 완전한 수용을 고무하지 못했다. 1649년의 알렉세이 법전 편찬자들도 외국의 법을 열심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전에서 로마법대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1700년경에 이르러 서유럽과 러시아의 접촉이 증대되면서 모스크바의 도서관들에는 로마법대전의 몇몇 사본이 들어왔다. 즉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로마법이 러시아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Hammer(1957), 1-6; 295.

87) 스페란스키와 발루기안스키는 2년 동안 베를린에 파견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교과과정의 틀을 만들었다. 그 교과과정에 따르면 제1년차에 학생들은 총 6개의 분야

직하면서 국내의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의 법학교수로 부임했다.⁸⁸⁾

그러나 니콜라이 1세는 법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매우 신중한 형태의 변화만을 추구했다. 이는 1835년의 대학령에서 잘 드러났다.⁸⁹⁾ 니콜라이 1세는 일반법 대신 특정한 법의 연마야말로 학생들을 통치자에 순종적인 관료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간주했다.⁹⁰⁾ 따라서 알렉산드르 1세 치세까지 법학 교과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자연법 강좌는 법학 강좌에서 제외되었으며, 법학부는 러시아법 강좌들로 채워졌다.⁹¹⁾ 학생들이 추상적인 법률 원칙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보다 <러시아제국 법전(Свод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의 구체적 법조항을 암기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인 니콜라이 1세의 법교육 정책방향에 따라 이제 학생들은 러시아법의 상세한 사항들을 배워야 했다. 많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러시아제국 법전>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낭송할 것을 요구했다.⁹²⁾

를 공부해야했다. 그 분야는 첫째, 블라디미르 시대부터 19세기 초까지의 러시아 법제사 개관, 둘째, 러시아 국가법이나 러시아 공법, 셋째, 로마법과 민법에 대한 로마법 이론, 넷째, 정치경제학, 다섯째, 역사 일반, 여섯째,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분야였다. 제2년차에도 학생들은 6개 분야를 공부해야 했다. 그 분야는 첫째, 러시아 민법 둘째, 정치법 셋째, 러시아제국의 재무와 관련된 법 넷째, 로마법 다섯째, 러시아사 여섯째, 외국어 분야였다. Whisenhunt (2001), 100-101.

88) Wortman (1976), 45-46; Raeff (1969), 327. 1828-1835년 동안 정부는 연간 평균 6명의 학생을 베를린으로 보내 법훈련을 시켰다. 러시아정부에 의해 해외로 파견된 학생들의 이런 유학 물결은 러시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법을 가르치는 법률학교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문을 연 1835년에 종결되었다. Whisenhunt (2001), 102.

89) 1835년 대학령은 철학, 정치경제학, 통계학으로부터 법학부를 분리하여 법학부를 독립적인 학부로 만들었다. Миллюков (1994), 299.

90) Wortman (1969), 227.

91) 러시아에서 자연법 강의는 18세기 중반에 도입되었다. 18세기의 여제 엘리자베타(치세; 1741-1762)는 귀족들이 체계적 법학 연마에 힘쓰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최초의 러시아군주였다. 그는 두 명의 법학자, 즉 벨기에인 피에르몬트(Fredrich Strube de Piemont)와 오스트리아인 딜테이(Phillippe Henrich Dilthey)를 러시아에 초빙했다. 피에르몬트는 과학학술원에서 가르쳤으며 딜테이는 1755년에 설립된 모스크바대학의 최초의 법학 교수가 되었다. 두 사람 모두 로마법과 자연법을 가르쳤다. 1770년에 딜테이는 육해군법에 의거하여 러시아법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Wortman(1976), 25.

법교육에 대한 니콜라이 1세의 신중한 태도는 그가 치세 내내 강력한 차르 체제와 농노제의 바탕 위에서 기존 질서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만 전 통치영역에 걸친 점진적이고도 신중한 변화를 추구했던 점과 관련되어 있었다. 니콜라이 1세의 이런 보수적 시각은 그의 치세의 공식 강령이었던 '관제 국민주의'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1833년 교육대신 우바로프 백작에 의해 공식 발표된 관제 국민주의는 전제주의, 정교신앙, 국민성의 세 원칙을 포함했다. 관제 국민주의의 기치 하에서 니콜라이 1세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파괴적인 사상으로 뒤덮인 채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문화적으로 퇴폐한 것처럼 보이는 서유럽과 러시아는 서로 매우 다른 실체라고 파악했다. 더욱이 그는 서유럽의 정치적 변모가 러시아의 전제주의를 파괴하려는 위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따라서 그는 기존질서 특히 전제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는 부패한 서유럽을 쫓아 러시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서유럽과는 다른 러시아의 고유한 역사 과정을 존중하면서 매우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변화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⁹²⁾

니콜라이 1세 정부는 관제 국민주의의 기치 하에서 국가의 통제 밖에 놓여 있는 귀족의 사교육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1833년에 우바로프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수도에서 새로운 사립 기숙학교의 설립을 금지했다. 외국인이 러시아 신민이 될 경우에만 사립 기숙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는 기존의 기숙학교를 교육부의 감독 아래에 두었으며, 러시아로 교육할 것과 러시아사 수업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⁹⁴⁾ 나아가 정부는 귀족 젊은이들을 국가봉직을 감당할 미래의 유능한 관료들로 준비시키기 위해 가정교사를 통한 가정교육이나 사립 기숙학교와 같은 사교육 대신에 정규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을 강조했다.⁹⁵⁾

사실 이미 알렉산드르 1세 치세부터 차르정부는 교육받은 귀족 관료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1801년에 즉위한 알렉산드르 1세는 치세 초에 세 개의 고등교육기관인 하리코프 대학, 카잔 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육원을 창설한 후 귀족들을 대학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

92) Wortman(1976), 45-46; Wortman(1969), 27; Whisenhunt(2001), 109.

93) Lincoln(1990), 12-15.

94) Миллюков(1994), 297; Wortman(1976), 47-48.

95) 니콜라이 1세는 부유한 귀족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을 유럽의 여러 사상을 러시아에 들여와 그 귀족들을 오염시키는 자들로 간주했다. Wortman(1976), 47.

다.⁹⁶⁾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1809년 8월 6일에 알렉산드르 1세는 시험법을 공표했다. 이 법은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이나 대학이 주관하는 시험 통과를 고위 관등에 올라가는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했다. 이제 세습귀족이 되기를 원하거나 중요한 정부관직에 오르는 데에 필요한 고위 관등을 획득하기 원하는 귀족은 대학교육을 마치거나 그에 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⁹⁷⁾

하지만 시험법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을 대학으로 이끌려는 알렉산드르 1세의 노력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의 귀족들은 대학교육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 이유는 19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귀족이 고등교육을 받은 후 봉직 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가정교사를 통해 집에서 교육을 받은 후 어린 나이에 군대에서 군사경험 및 훈련을 쌓는 것으로 봉직 생활을 시작하던 점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 후 보편적으로 귀족은 적절한 관직을 보장하는 관등을 수여받은 후 민간봉직 자리로 이동했다.⁹⁸⁾ 이런 방식을 통해 귀족들은 민간 봉직 자리로 옮겨갔을 때 전문적 능력과 실질적인 경험을 요구하는 하위직에서부터 관료생활을 시작해야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귀족은 개인 혹은 가문 등에 의한 연고를 통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귀족 젊은이들은 미래의 귀족 관료들의 교육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차르정부의 대학교육 강조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많은 귀족들은 1809년의 시험법을 아예 무시했다.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로서 국가에 봉직하고자 하는 귀족에게 요구되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다. 알렉산드르 1세 정부는 1822년의 한 법령을 통하여 대학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관등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젊은 귀족들을 대학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다. 1822년 이전에는 대학 졸업생은 제14관등을, 우수 성적 졸업생(кандидат)은 제12관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대학 재학생은 제14관등을, 대학 졸업생은 제12관등을, 우수 성적 졸업생은 제10관등을 부여받았다. 석사는 제9관등을, 박사는 제8관등을 부여받았다.¹⁰⁰⁾

96)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육원은 1819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개명되었다.

97) 세습귀족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관등은 제5관등(статский советник)이었다.

98) Wortman(1976), 53.

99) Flynn(1968), 501-503.

100) Wortman(1976), 48. 귀족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809년의 시험법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험법은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Raeff(1984), 132.

니콜라이 1세가 재위에 오른 1825년 이후에도 귀족에게 요구되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졌다. 관료들의 교육 자격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귀족 출신 중 대학교육을 받은 관료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귀족 출신의 관료들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관등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정교육만을 받은 귀족 출신의 관료가 세습귀족 칭호가 부여되는 제5관등에 올라가는 데에 평균 37년이 걸렸다. 반면에 대학 학위를 취득한 귀족 출신의 관료가 제5관등에 올라가는 데에 가정교육만을 받은 관료의 경우보다 평균 13년이 줄어든 24년이 걸렸다.¹⁰¹⁾ 그 결과 니콜라이 1세가 재위에 오른 지 십수 년이 지나지 않아 대학, 특히 양 수도의 대학에 다니는 귀족들의 수는 엄청난 정도는 아니더라도 증가했다. 1830년대에 사륜마차를 타고 종종 하인들을 대동한 젊은 고위 귀족들이 하위 귀족들 및 평민들과 더불어 강의를 들었다. 특히 귀족들의 수가 가장 많은 학과는 미래의 관료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고 간주되었던 법학부였다.¹⁰²⁾

몇몇 대학의 법학부를 제외하고 러시아 국내에서 전문으로 법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은 법률학교(Училище правоведения)였다. 1835년에 창설된 법률학교는 체계적인 법교육을 귀족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사법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1838년 법률학교 규정에 따르면 표트르 대제 이전 시대에 귀족 지위를 획득한 세문귀족 가문의 자제이거나 제5관등 이상의 문관이나 제6관등 이상의 무관의 자제들만이 법률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귀족 젊은이들은 보통 11살에서 15살에 법률학교에 입학하여 7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첫 3년 동안 언어, 역사, 수학, 다른 일반초등 과목을 배웠고, 나머지 4년 동안 로마법, 국법, 민·형사법과 민·형사 소송절차, 지방법, 재무법, 경찰법, 법의학 등 법을 중점적으로 배웠다.¹⁰³⁾ 법률학교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법 강좌의 주안점은 단순히 법을 암기하는 것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니콜라이 1세 치세에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현행법 자료를 반복해 암기하고 <러시아제국 법전>을 배우고 그 법전의 거의 각 조항을 교리로 삼는 것을 의미했다.

101) 대학교육을 받은 비귀족 출신의 관료가 제5관등에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26년)은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42년) 평균 16년이 덜 걸렸다. Lincoln (1975a), 315.

102) Оже-де-Ранкур(1896), 571.

103) Sinel(1976), 5; Тютчев(1885), 436-452.

그러나 무미건조한 강의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법교육은 차르에게 순종하는 법전문 관료들의 육성이라는 니콜라이 1세의 의도를 뛰어넘어 학생들에게 정의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수호하는 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840년대 초반에 법률학교의 학생 중 한 명이었던 포베도노스체프는 법률학교의 유산을 묘사하면서 수업에서 우리는 (...) 정의(правда)를 지키는 자는 훌륭한 자이며 조국의 믿음직한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정의는 영감이 아니며 노력 없이는 개인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들었다. 정의는 강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 획득된다”고 언급했다.¹⁰⁴⁾

많은 법률학교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서유럽의 문학과 이론은 학생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수업과 관련된 책 외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의 소설, 시 등 문학작품과 역사책을 돌려 읽은 후 함께 토론하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불충분한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독서와 토론을 통해 규정된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서서 넓은 것에 대한 변화를 꿈꾸었다. 예를 들어 1840년대 초에 법률학교에 재학했던 스타소프(В. В. Стасов)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빅토르 위고의 문학이 옛 것과 부적절한 것을 변혁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나에게 거인이며 찬란한 신(神)이었다!”고 회상했다.¹⁰⁵⁾

졸업 후 법률학교 학생들은 법 수호라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도덕적 의무감을 지닌 채 관료사회에 진출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충돌했다. 학생들은 졸업 성적에 따라서 제9관등, 제10관등, 또는 제12관등을 수여받았다. 학업을 마친 후 사비생들과 국비생들은 법무부나 원로원에서 각각 4년과 6년을 봉직해야 했다. 법률학교 졸업생들은 관직사회에 진출한 후 승진 및 보너스에서 다른 관료들보다 혜택을 받았지만 사법관료로서 그들의 봉직생활

104) Молчанов(1892), 33.

105) Стасов(1881), 420. 특히 학생들은 외국의 소설가 중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 빅토르 위고(Victor Hugo), 월터 스콧(Walter Scott) 등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영웅적 행동에 환호했다. 링컨은 당시 러시아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낭만주의가 영웅주의적 행동에 대한 이 엘리트학교 학생들의 찬양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바로 소설 속의 그런 영웅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삶의 경로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고 파악한다. 즉 링컨에 따르면 그런 소설 속 주인공의 영웅적 행동을 찬미했던 학생들은 졸업 후 관료사회에 진출했을 때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Стасов(1881), 407-421; Lincoln(1982), 70.

은 서류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는 등 단순하고 지루한 서류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¹⁰⁶⁾ 설령 그들이 실제로 재판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자신의 뜻과는 달리 재판이 불공정하게 끝나는 것을 자주 목격해야 했다.

4.2. 개명 사법관료층의 형성

비록 모든 법률학교 출신 봉직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사법제도의 단점 및 관료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직권남용을 개탄하고 법준수(законность)의 확립을 지향하면서 낡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법률학교 졸업생으로서 1840년대에 사법관료로 봉직했던 오블렌스키(И. А. Оболенский)는 재판소의 형식주의가 분노할만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사법질서에 대한 희망을 공유한 다른 젊은 사법관료들과 자신의 집에서 모여 독서를 하며 현행 사법제도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¹⁰⁷⁾ 이후 오블렌스키는 1853년에 콘스탄틴 대공(Константин Николаевич; 1827-1892)이 지휘하던 해군부에 들어가 대공의 해군부 개혁 업무를 도왔다. 비록 오블렌스키는 해군부로 자리를 옮겼지만 사법운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1850년대 후반에 공개재판제도를 옹호하는 메모를 작성하여 관료들 사이에 유포시켰던 첫 번째 관료가 바로 오블렌스키였다. 역시 법률학교 졸업생으로서 1850년대 초에 모스크바 주 검사였던 로빈스키(И. А. Ровинский)는 재판소 및 형벌제도의 단점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살인자와 강간범이 ‘혐의형 판결’을 받고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정식증거 원칙에 반대했다.¹⁰⁸⁾ 또한 그는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에 모스크바의 여러 형무소를 시찰하고 죄수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죄수들의 음식을 맛보며 현장에서 형무소 업무를 조사했다. 니콜라이 1세 사후 로빈스키는 공개재판과 배심제의 지지자가 되었다.¹⁰⁹⁾ 역시 법률학교를 졸업한 후 1847년에 모교의 형사소송절차 실무 교사로 임명된 스토야넵

106) Wortman(1976), 49-50; 212

107) 오블렌스키는 대공비 엘레나 파블로브나의 살롱 등에서도 다른 진보적 관료들 및 인텔리겐치야와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Оболенский(1909), 5-6.

108) Кони(1914), 5-6.

109) 같은 책, 17, 20.

스키(Николай Стояновский)는 원로원에서의 봉직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학교 학생들에게 더 개선된 법교육을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1850년대 초에 스토야놉스키는 <러시아제국 법전>의 혼란스러운 조항들에 간단한 주석을 단 <러시아 형사 소송절차에 관한 실제적 지침서(прак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 русскому уголовному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у)>를 작성함으로써 형사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했다.¹¹⁰⁾

전반적으로 184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사법관리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자들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184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대학 뿐 아니라 법률학교의 졸업생들이 법무부로 충원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의 사법관리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1850년에 처음으로 간행된 원로원 및 법무부 관료들의 교육 수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워트먼에 따르면 교육 측면에서 볼 때 1840년부터 약 십년에 걸쳐 주목할 만한 진보가 특히 원로원의 사무직 관료들에게 발생했다. 1840년에 약 100명에 이르는 원로원 페테르부르크 지국의 서기관과 상급 서기관 중에서 단지 6명만이 고등교육을 받았다.¹¹¹⁾ 그러나 1850년에 같은 바로 그곳에서 봉직하던 80명의 서기관과 상급 서기관 중에서 50명이 대학, 법률학교, 차르스코예 셀로의 리세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1856년에는 원로원 모스크바 국 및 페테르부르크 국에서 봉직하던 총 300명의 사무관료 중에서 2/3 이상이 그런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자들이었다.¹¹²⁾

110) Кони(1914), 95-96. 법률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젊은 시절의 포베도노스체프 역시 러시아 사법제도의 비합리성과 불공평을 통감했다. 1854년 그는 페테르부르크의 고위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당대 러시아의 잘못된 사법질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다. Wortman(1976), 216.

111) Wortman(1969), 226.

112) Wortman(1969), 226. 이 수치는 *Список чинам правительствующего Сената 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за 1850 год* (СПб., 1850)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워트먼이 분석한 것이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성공적인 관직 경력 즉 높은 관직으로의 승진에 고등교육이 지녔던 중요성은 사법관직 이외의 관직 일반에도 해당되었다. Pintner(1970), 44; Pintner(1975), 61-64.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중앙정부의 사법관료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국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막 관직에 진출한 새로운 관료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점이다. 니콜라이 1세 치세의 마지막 십 년 동안 러시아제국 전반에 걸쳐 러시아 관료들은 약

고등교육을 마친 채 1840년대 초 이래 중앙의 사법관청에 진출한 그 관료들은 개명(enlightened) 사법관료들이었다. 이 개명 사법관료들은 군사봉직을 마친 후 전문적인 법교육이나 사법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 사법관직에 진출하여 봉직생활을 시작하던 이전 세대의 사법관료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¹¹³⁾ 이 새로운 사법관료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들이 이전의 사법관료 세대와는 달리 고등교육기관에서 법교육을 받은 자들 곧 전문교육의 수혜자들이었다는 점이다.¹¹⁴⁾ 이 새로운 사법관료들은 전문적 법교육을 통해 법을 여러 법률들의 단편적인 나열이 아니라 보존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를 지닌 규범들의 체계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헌신하면서도 정의 및 법 수호에 대한 이상과 여러 문제점들로 가득한 사법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차르와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대의 속에서 법교육을 받았던 그들은 이전 시대의 대부분의 사법관료들과는 달리 군주와 신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법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법을 수호하는 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¹¹⁵⁾ 즉 개명 사법관료들에게 사법관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다.

니콜라이 1세 치세 동안 그러한 소명의식을 지닌 중앙 사법관청의 대표적인 관료로 자루드니(C. И. Зарудный)를 들 수 있다. 그는 사법질서 확립에 대한

34% 증가했다. 1850년 한 해에만 12,000명 이상이 관등표의 제14관등이나 그 이상에서 출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러시아의 대학들이 연간 1,000명 이하의 학생들을 졸업시켰으며 차르스쿠에 셸로의 리체이와 법률학교의 졸업학급이 각각 30명 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관직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대부분의 관리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Lincoln(1982), 164-165; Lincoln(1990), 20-21.

113) 개명관료라는 말은 링컨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다. 자하로바는 링컨과 달리 그런 관료들을 자유주의적 관료들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런 관료들이 1840년대 초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자하로바는 링컨과 같은 견해를 지닌다. Zakharova(1994), 26. 1840년대와 1850년대에 국가재산부에도 일반적인 관료주의 원칙이 아니라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려고 노력한 젊고 유능한 개명관료들이 많이 봉직했다. Lincoln(1975b), 89.

114) Lincoln(1982), 71; Wortman(1976), 53.

115) Sinel(1976), 11-14; Lincoln(1982), 73-75; Wortman(1976), 198-208; 234; Wortman(2005), 147; Raeff(1984), 159; Pintner(1989), 88; Lincoln(1982), 73-76. 워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의 사법관청에 진출한 이 개명 사법관료 대부분은 부유한 대토지소유 귀족 출신이 아니라 소토지소유 귀족이거나 토지를 거의 소유하지 않은 가난한 귀족 출신이었다.

책임감을 가지고 유능한 사법관료 육성에 힘썼던 사람으로서 후에 알렉산드르 2세 치하에서는 1864년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이었다. 하리코프주의 가난한 귀족 출신인 자루드니는 1842년에 법무부에서 봉직생활을 시작했다. 1849년에 법무부 협의국의 법률고문(юрисконсульт при консульт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으로 임명된 자루드니는 법무부 협의국의 모든 사건들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는 법무부 협의국 내에서 특별히 재능을 갖춘 젊은 사법관료들을 모아 모임을 조직했다. 그 모임에서 그는 그들의 법률 보고서를 경청하고 그들의 법률 분석을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다. 당시 자루드니 하에서 봉직했던 젊은 관료 중 한 명이었던 슈빈-포즈데예프(Д. Шубин-Поздеев)는 자루드니는 다른 관료들보다도 더 많이 일하고, 관료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서 또한 결론을 고안하려는 욕망 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 내에서 전면적으로 각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서 일하도록 다른 관료들을 고무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고 회상했다.¹¹⁶⁾

하지만 사법봉직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정서 즉 사법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은 니콜라이 1세 치세 동안 중앙 및 지방의 모든 사법관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법무대신 파닌조차도 법전문가란 현행법과 질서를 따르도록 훈련받은 자에 다름없다고 간주했다.¹¹⁷⁾ 일반적으로 재판관들은 절대군주가 공포하는 법의 집행자들에 불과했다.¹¹⁸⁾ 따라서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진정한 정의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¹¹⁹⁾ 게다가 권력 및 문화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채 형편없는 봉급을 받던 지방에 소재한 재판관들의 낮은 위신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귀족들은 선출직인 재판관직 봉직을 성가신 의무로 인식했다. 더욱이 하급심 재판관의 상당수는 문맹이거나 반문맹이

116) Шубин-Поздеев(1888), 481. 알렉산드르 2세 치세에 자루드니의 피보호자들은 1864년 사법개혁법을 작성한 중심적인 인물들이 되었다.

117) Wortman(1976), 184-185.

118) 차르의 관료들에 의해 표현되는 통치자의 의지도 차르의 개인적 권력만큼이나 같은 영향력을 지닐 수 있었다. 제정러시아 말기에 이르기까지 법의 효력을 지닌 행정명령(распоряжение)과 법(закон)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Wortman(1976), 16.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Szeftel(1965), 105-109를 볼 것.

119) LeDonne(1974), 117; Lincoln(1982), 58-60.

었으며 제대로 된 법률지식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실질적인 재판 진행과정을 서기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얼마 안 되는 봉급을 받던 그들은 수뢰의 유혹으로부터도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 러시아의 사법관료 대부분이 법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서 사법업무에 헌신적으로 임하지 못했다는 점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국가관료들을 양산하려는 니콜라이 1세의 노력은 중앙의 주요 사법관직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대학이나 법률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전문적 법교육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연마하면서 법을 존중하게 되고 법 수호에 대한 사명감을 지닌 채 자신이 맡은 업무에 헌신하는 일단의 귀족 사법관료 집단이 등장했다. 그런 개명관료들의 수는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전문 교육의 수혜자인 그들은 이전 세대의 사법관료들과는 달리 군주와 신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더불어 법과 정의 수호에 대한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다. 전문적 법교육을 받은 후 1840년대 초 이래로 중앙의 주요 사법관청에 진출하기 시작한 개명관료 대부분은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물론 사법제도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애쓰던 그들의 노력은 1848년 이래로 러시아사회에 만연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차 인식해갔다. 바로 이들은 다음 차르 치세에 들어와서 1864년의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단행하는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다. 요컨대 개혁을 주도한 개명 사법관료들은 알렉산드르 2세 치세 때에 갑자기 등장한 자들이 아니었다. 이미 그들의 뿌리는 19세기 전반기에 걸쳐 특히 1840년대 이래로 형성되었다.

5. 결론

니콜라이 1세 치세에 운영되던 제정러시아의 사법제도는 여러 단점을 드러냈다. 민·형사 소송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규문주의, 밀실재판, 재판관들의 수뢰 및 무지, 소송절차의 지연 등은 러시아 제국 내에 빠르고도 공정한 재판의 확립을 막았으며 재판소에 대한 당대인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사법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위로는 전제권력을 가진 차르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어느 때나 정규적인 사법절차를 취소하거나 뒤엎을 수 있는 상황과 아래로는 하급 사법관리들 사이에까지 만연한 수뢰 관행이 존재하는 상황은 사법영역에서 엄정한 법 준수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로 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국을 탄탄한 법적 토대 위에 세워놓고자 한 니콜라이 1세는 <러시아제국 법률전집>과 <러시아제국 법전>을 간행하는데 성공했다. 법전편찬 뿐 아니라 니콜라이 1세 치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법안들도 작성되었다. 법전편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치세 전반에 걸쳐 니콜라이 1세는 전제정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고도로 효율적인 관료기구로서 사법기관을 계획하고 사법제도의 단점을 수정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그러한 법안 중 어떠한 것도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다. 1830년과 1848년에 유럽에서 혁명이 발생할 때마다 유럽의 헌병으로서 혁명운동을 진압하고 그 여파가 러시아 국내로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 니콜라이 1세 치하에서 사법개혁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법들이 제안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성을 지녔다. 사법개혁에 관한 법안의 준비와 그에 대한 심의는 차르 정부 내에서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증가시켰다.

한편 1840년대 초 이래로 전문적인 법교육을 받은 젊은 관료들이 페테르부르크 중앙 사법기관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관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즉 이들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소명의식을 갖고 사법업무를 담당하고 사법제도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애쓰던 개명 사법관료들이었다. 다음 차르 치세에 들어와 1864년의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단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관료들은 바로 이들이었다. 요컨대 19세기 중엽의 사법개혁을 주도한 개명관료들의 뿌리는 이미 19세기 전반기 동안에 형성되었다.

참고문헌

- 찌모쉬나, 따찌야나 미하일로브나(2006) 『러시아 경제사』 이재영 옮김, 한길사.
오두영(2001) 「라지쉴프의 개혁사상」, 『역사문화연구』 제14호.
- Беляев, И. Д.(1879) *Лекции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Москва.
Берентс, И. Д. и Блинов, И. А.(1914) *Судебные Уставы 20 ноября 1864 года за пятьдесят лет, Петроград*, Т.1-2
Блинов, И. А.(1914) *Судебная реформа 20 ноября 1864 г.*, Петроград.
Бочкарев, В.(1915) "Дореформенный суд," Давыдов Н. В. и Полянский Н. Н. (ред), *Судебная реформа*, Москва. Т.1.
Виленский, Б. В.(1963) *Подготовка судебной реформы 1864 г. в России*, Саратов.
_____ (1969) *Судебная реформа и контрреформа в России*, Саратов.
Владимирский-Буданов, М. Ф.(1909) *Обзор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права*, Киев.
Гессен, И.(1906) *Судебная реформ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Головачев, А. А.(1875) *Десять лет реформ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1801-1901,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Даль, В.(1984) *Пословицы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Москва, т. 1.
Джаншиев, Г. А.(1891) *Основы судебной реформы*, Москва.
_____ (1907), *Эпоха великих рефор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т. 1-2.
Ефремова, Н. Н.(1983)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1802-1917 гг.*, Москва.
Иллюстров, И.(1885) *Юридические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Москва.
Карнович, Е. П.(1873) "Слаб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юридических знаний в нашем обществе," *Очерки наших порядко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судебных*, 1-16.
Колмаков, Н. М.(1886) "Старый суд,"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т. 52, 511-544.
Кони, А. Ф.(1904) "Дмит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Ровинский," К. К. Арсеньев (ред.), *Главные деятели и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и судебной реформ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_____ (1914) *Отцы и дети судебной реформ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Коротких, М. Г.(1994) *Судебная реформа 1864 года в России*, Воронеж.

- Милюков, П. Н. (1994)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т. 2.
- Миронов, Б. Н. (2000) *Социальн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периода империи (XVIII—начало XX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т. 2.
- Молчанов, М. М. (1892) *Пол-Века Назад: Первые годы училища правоведения в С.-Петербург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Нерсесянц, В. С. ред. (1986)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го права в XV-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VII в.*, Москва.
- Никитенко, А. В. (1955) *Дневник*, Москва, т. 1.
- Оболенский, Д. А. (1909) *Мои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Великой Княгине Елене Павловн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Оже-де-Ранкур, Н. (1896) "В дву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 Осипов, И. Д. ред. (2002) *М. М. Сперанский, Руководство к Познанию Закон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Плетнев, В. (1915) "Работы по составлению проектов судебног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до 1861 года", *Судебная реформа*, Давыдов Н. В. и Полянский Н. Н. (ред.), Москва, Т.1.
- Садовничий, В. А. ред. (2004) *История России XIX-начала XX века*, Москва.
- Скрипилев, Е. А. ред. (1994)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го прав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Москва.
- Стасов, В. В. (1881) "Училище Правоведения Сорок Лет Тому Назад,"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No. 1, 393-422.
- Тарановский, Т. (1992) "Судебная реформа и развит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царской России," Захорова Л. Г., Эклов, Бен и Бушнелл. Джон, *Великие реформы в России 1856-1874* Москва.
- Тургенев, Н. И. (1982) *Взгляд на дела России. Русский заграничный сборник*, Лондон.
- Тютчев, И. А. (1885) "В училище правоведения в 1847-1852,"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No. 11, 436-452.
- Фененко, В. Ф., Берентс, Е. Н. и Блинов, И. А. (1914) *Судебные Уставы 20 ноября 1864 года за пятьдесят лет*, Петроград, т. 1-2.
- Филиппов, М. А. (1871-1875) *Судебная реформа в Росси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т. 1-2.

- Филиппов, А. Н. (1914) *Учебни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права*, Юрьев.
- Чистяков, О. И. и Новицкая, Т. Е. сост. (1998) *Реформы Александра II*, Москва.
- Шубин-Поздеев, Д. (1888) "Сергей Иванович Зарудный,"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LVII, 2, сс. 477-484.
- Шувалова, В. А. (1964) "О сущности судебной реформы в России в 1864 г.," *С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No. 10, сс. 121-127.
- _____ (1965) "К вопросу о судебной реформе 1864 г.,"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No. 2, сс. 209-121.
- Butler, William E. ed. (1977) *Russian Law: Histor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Leyden.
- Crummey, Robert O. ed. (1982) *Reform in Russia and the U.S.S.R.*, University of Illinois.
- Curtiss, J. Sheldon ed. (1965) *Essays in Russian and Soviet History*, New York.
- Eklof, B., Bushnell, J. & Zakharova, L. eds. (1994) *Russia's Great Reforms, 1855-1881*,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Flynn, James T. (1968) "The Universities, the Gentry, and the Russian Imperial Services, 1814-1825," *Canadian Slavic Studies*, Vol. 2, Issue 4, pp.486-503.
- Hammer, Darrell P. (1957) "Russia and the Roman Law," *The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16, No. 1, pp.1-13.
- _____ (1972) "The Character of the Russkaia Pravda," *Slavic Review*, Vol. 31, No. 2 pp. 291-295.
- Jones, Robert E. (1970) "Catherine II and the Provincial Reform of 1775: A question of motivation," *Canadian Slavic Studies*, Vol. 4, No. 3, pp.497-512.
- Kucherov, Samuel (1948) "Administration of Justice Under Nicholas I of Russia,"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 No. 2
- _____ (1974) *Courts, Lawyers and Trials under the Last Three Tsars*. Conn.: Greenwood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1953, New York.

- Ledonne, John P.(1974) "Criminal Investigations Before the Great Reforms," *Russian History*, Vol. 1. Part 2, pp.101-118
- _____ (1991) *Absolutism and Ruling Class: The Formation of the Russian Political Order 1700-182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ncoln, W. Bruce(1975a) "The Ministers of Nicholas I: A Brief Inquiry Into Their Backgrounds and Service Careers," *Russian Review*, Vol. 34, No. 3, pp.308-323.
- _____ (1975b) "The Daily Life of St. Petersburg Officials in the Mid Nineteenth Century," *Oxford Slavonic Papers*, Vol. 8, pp.82-100.
- _____ (1978) *Nicholas I: Emperor and Autocrat of All the Russias*, Bloomington.
- _____ (1982) *In the Vanguard of Reform: Russia's Enlightened Bureaucrats 1825-1861*,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The Great Reforms: Autocracy, Bureaucracy, and the Politics of Change in Imperial Russia*,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MacKenzie, David and Curran, Michael W.(1998) *A History of Russia, the Soviet Union, and Beyon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4th edition.
- McFarlin, Harold A.(1974) "The Extension of the Imperial Russian Civil Service to the Lowest Office Workers: The Creation of the Chancery Clerkship, 1827-1833," *Russian History*, Vol. 1, pp. 1-17.
- McIntire, S. W.(1973) "The Russian Judicial Reform of 1864: Its Origins and Development, 1825-1864," Ph. D. Dissertation i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 Pintner, Walter M.(1970)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Nineteenth-Century Russian Bureaucracy," *Slavic Review*, Vol. 29, No. 3, pp. 429-443.
- _____ (1975) "The Russian Higher Civil Service on the Eve of the Great Reforms,"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8, No. 3, pp. 55-68.
- Raeff, Marc(1969) *Michael Speransky: Statesman of Imperial Russia 1772-1839*, Hague.

- _____ (1984) *Understanding Imperial Russia: State and Society in the Old Regime*, New York.
- Saunders, David (1992) *Russia in the Age of Reaction and Reform 1801-1881*,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Sinel, Allen A. (1976) "The Socialization of the Russian Bureaucratic Elite, 1811-1917: Life at the Tsarskoe Selo Lyceum and the School of Jurisprudence," *Russian History*, Vol. 3, Pt. 1, pp. 1-31.
- Solomon, Jr. P. H. ed. (1997) *Reforming Justice in Russia, 1864-1996: Power, Culture, and the Limits of Legal Order*, New York.
- Whelan, Heide W. (1982) *Alexander III & The State Council*, New Brunswick.
- Whisenhunt, W. B. (2001) *In Search of Legality: Mikhail M. Speranskii and the Codification of Russian Law*, New York.
- Wortman, Richard S. (1969) "Judicial Personnel and the Court Reform of 1864," *Canadian Slavic Studies*, Vol. 3, No. 2, pp. 224-234.
- _____ (1976) *The Development of a Russian Legal Consciousne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5) "Russian Monarchy and the Rule of Law: New Considerations of the Court Reform of 1864,"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Vol. 6, No. 1, pp. 145-170.

Abstract**The Russian Judicial System and Bureaucrats in Legal Administration before the Judicial Reform of 1864**

Yi, Shie-Youn

The Russian legal system before the judicial reform of 1864 was characterized by various shortcomings such as the inquisitional principle based on the doctrine of 'formal evidence,' complexity of procedure in which a case could be involved in the pre-reform judicial system, secrecy of legal procedure, venality of the judicial personnel, illiteracy of the majority of judges, etc. The shortcomings made rapid and equitable administration of justice almost impossible and caused extensive dissatisfaction with the courts among the population.

Nevertheless the *Polnoe sobranie zakonov*' and the *Svod Zakonov*' were completed and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Nicholas I. They were the result of the tsar's strong desire for codification of the laws and setting the Russian empire on a strong legal foundation. A number of proposals to reform the judicial system were made in his reign as well. However any of the judicial reform proposals were not enacted due to the emperor's fear of revolution in Russian empire in the face of general revolutionary groundswell that spread across the Continent in the 1830s and 1840s and Nicholas' retreating from change at these times. Some of the officials involved with attempts to reform the judicial system nevertheless saw the need for reform of the old legal order. In short, the attempts produced the increase of notions of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among the officials in the Russian government.

Meanwhile, by the end of Nicholas' reign a handful of young judicial officials emerged in Petersburg. They were enlightened bureaucrats in the legal administration. They dedicated themselves to their work with the

new sense of obligation to the law manifested itself in their mission to protect and advance law and justice in the legal administration. The enlightened bureaucrats also pondered on and put into practice ways to change the old judicial system. Later during the reign of Alexander II they would be the leading group of preparing and implementing the judicial reform of 1864.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9. 03. 02
논문심사일:	2009. 03. 11 ~ 2009. 03. 28
심사완료일:	2009. 04. 07